

의안번호	2219769
의 퇴 인	김형동의원
회 답 일	2026.8.28.
추계번호	26C358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의3 신설(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설립 등)	○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이하 “원료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제1항 신설) 1. 의료용 마약류 원료 재배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의 재배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마약류 원료 수요조사 및 수급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임시마약류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 5. 대마재배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료용 마약류의 재배 등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 원료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제2항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료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신설)	재량규정
		○ 원료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신설) ○ 원료관리센터의 조직,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의3 신설(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설립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법인인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어 의료용 마약류 원료 재배

구역 관리, 대마재배자의 재배계약 체결 및 교육, 마약류 원료 수요조사 및 수급 관리 지원, 마약류·임시마약류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¹⁾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원료관리센터의 조직,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안 제36조의3제5항)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assembly.go.kr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및 조직 운영 모델 설계 연구용역에 2026년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함